

참고용 번역본. 이 번역본은 편의를 위해 제공됩니다. 이 번역본과 이사회가 채택한 영어 원본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본이 우선합니다. 문의 사항은 지구 사무소 (530) 258-2171 로 전화하십시오.

Courtesy translation of CPUD Policy 3050, Water Shut-Off Procedures (adopted March 31, 2020). The English version adopted by the Board of Directors controls.

체스터 공공 유틸리티 지구 (CHESTER PUBLIC UTILITY DISTRICT)

정책 제 3050 호

주거용 수도 서비스 중단에 관한 정책 및 절차

1. 목적

본 정책은 “단수 보호법”으로 알려진 상원 법안 998 호(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제 116900 조 이하)를 준수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 시행일

본 정책은 2020 년 4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3. 게시 언어

본 정책과 본 정책에서 요구하는 서면 통지는 영어, 민법 제 1632 조에 열거된 언어(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한국어 포함), 그리고 지구 급수 지역 주민의 최소 10 퍼센트가 사용하는 기타 언어로 제공되고 게시됩니다.

4. 주거용 수도 서비스 중단 전 선행 요건

A. 지구는 고객이 최소 60 일 동안 연체하기 전에는 미납을 이유로 주거용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미납으로 주거용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기 최소 7 영업일 전에, 지구는 부록 1 에 제시된 양식의 단수 통지서로 계정 명의 고객에게 연락합니다.

B. 지구가 (A)항에 따라 서면 통지로 계정 명의 고객에게 연락할 때, 연체 및 임박한 서비스 중단에 관한 서면 통지는 고객의 등록 주소로 우편 발송됩니다. 고객의 주소가 주거용 수도 서비스를 받는 부동산의 주소가 아닌 경우, 통지는 “현 거주자” 앞으로 수도 서비스를 받는 부동산 주소에도 발송됩니다. 통지에는 다음의 모든 정보가 명확하고 읽기 쉬운 형식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i) 고객의 이름과 주소.

- (ii) 연체 금액.
- (iii) 주거용 수도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해 납부하거나 납부 약정을 해야 하는 기한. 이 기한은 총괄 관리자가 재량으로 연장하지 않는 한 청구서가 연체된 날로부터 60 일입니다.
- (iv) 연체 요금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
- (v) 청구서 검토 및 이의 제기를 청원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
- (vi) 연체된 주거용 수도 서비스 요금의 분할 상황을 포함하여, 고객이 유예, 감액 또는 대체 납부 일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설명.
- (vii) 지구의 전화번호.

5. **선의의 통지 요건.**

- A. 지구가 전화로 고객 또는 해당 주거지에 거주하는 성인과 연락할 수 없고 서면 통지가 배달 불가로 반송된 경우, 지구는 선의로 해당 주거지를 방문하여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수도 서비스 중단이 임박했다는 통지와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수도 서비스 중단에 관한 지구의 정책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남겨 두거나 게시하도록 기타 조치를 취합니다.
- B. 고객이 청구서 검토나 이의 제기를 원하는 경우, 납부 기한 전에 지구에 연락해야 하며 지구는 이를 조사합니다.

6. **주거용 수도 서비스 중단 금지.**

- A.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지구는 미납을 이유로 주거용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 (i) 고객 또는 고객의 임차인이 복지 및 기관법 제 14088 조 (b)항 (1)호 (A) 목에 정의된 1 차 진료 제공자의 증명서를 지구에 제출하여, 주거용 수도 서비스 중단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의 거주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 (ii) 고객이 지구의 정상적인 청구 주기 내에 주거용 수도 서비스 요금을 납부할 재정적 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고객 가구의 구성원 중 누구라도 현재 CalWORKs, CalFresh, 일반 지원, Medi-Cal, 생활보조금/주 추가 지급 프로그램, 또는 캘리포니아 여성·영아·아동 특별 영양 보충

프로그램(WIC)의 수혜자이거나, 고객이 가구의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 퍼센트 미만이라고 신고하는 경우, 고객은 지구의 정상적인 청구 주기 내에 납부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iii) 고객이 모든 연체 요금에 대해 분할 상환 약정, 대체 납부 일정, 또는 유예 또는 감액 납부 계획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 경우.

B. 위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지구는 고객에게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선택을 제공합니다.

- (i) 미납 잔액의 분할 상환.
- (ii) 대체 납부 일정 참여.
- (iii) 다른 요금 납부자에게 추가 부담 없이 재원을 마련한 미납 잔액의 일부 또는 전액 감면.
- (iv) 일시적인 납부 유예.

C.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구가 부동산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서비스 중단 의사에 관한 최종 통지를 게시한 후 최소 5 영업일이 지나야 주거용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i) 고객이 연체 요금에 대한 분할 상환 약정, 대체 납부 일정, 또는 유예 또는 감액 납부 계획을 60 일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 (ii) 연체 요금에 대한 분할 상환 약정, 대체 납부 일정, 또는 유예 또는 감액 납부 계획을 이행하는 동안 고객이 현재 주거용 수도 서비스 요금을 60 일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7. **수도 서비스 복구.**

A. 지구가 미납을 이유로 주거용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고객에게 주거용 수도 서비스를 복구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 퍼센트 미만임을 지구에 입증하는 주거 고객에 대해 지구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시행합니다.

- (i) 정상 운영 시간 중 재연결 수수료를 오십 달러(\$50) 이하로, 또는 실제 재연결 비용이 그보다 적은 경우 실제 비용으로 정합니다. 운영 시간 외 주거용 수도 서비스 재연결의 경우, 지구는 재연결 수수료를 백오십 달러

(\$150) 이하로, 또는 운영 시간 외 실제 재연결 비용이 그보다 적은 경우 실제 비용으로 정합니다. 운영 시간 중 \$50 및 운영 시간 외 \$150의 상한액은 2021년 1월 1일부터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ii) 12개월마다 한 번 연체 청구서에 대한 이자 요금을 면제합니다.

B. 가구 구성원 중 누구라도 현재 CalWORKs, CalFresh, 일반 지원, Medi-Cal, 생활보조금/주 추가 지급 프로그램, 또는 캘리포니아 여성·영아·아동 특별 영양 보충 프로그램(WIC)의 수혜자이거나, 고객이 가구의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 퍼센트 미만이라고 신고하는 경우, 지구는 해당 주거 고객의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 퍼센트 미만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임대인-임차인 관계와 관련된 서비스.

A. 지구가 단독 주택, 다세대 주거 건물 및 이동식 주택의 거주자에게 개별 계량 주거용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주택, 건물 또는 단지의 소유자, 관리인 또는 운영자가 등록 고객인 경우, 지구는 계정이 연체되었을 때 서비스 종료 최소 10일 전에 서면 통지로 거주자에게 서비스가 종료될 것임을 알리기 위해 모든 선의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서면 통지에는 거주자가 연체 계정의 미납액을 지불하지 않고도 고객이 되어 이후 서비스 요금을 청구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B. 각 거주자가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고 법률 및 지구의 조례, 결의, 규칙 및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지구는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명 이상의 거주자가 지구가 만족할 정도로 계정의 이후 요금에 대한 책임을 질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우, 요건에는 \$180의 보증금 납부와 지구 서비스 신청서 작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9. 보고 요건.

지구는 매년 납부 능력 부족으로 인한 주거용 서비스 중단 건수를 주 수자원 통제 위원회에 보고합니다.

10. 본 정책의 한계.

본 정책의 어떠한 내용도 고객의 무단 행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본 정책에 명시된 사유 이외의 사유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는 지구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11. 이의 제기.

고객은 주거용 수도 서비스 청구서에 기재된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구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록
단수 통지서
(양식)

John and Jane Doe

계정 번호: 00001

P.O. Box 1234

납부할 금액: \$100.00

Chester, CA 96020

위치: 1234 Main Street

_____ 오후 _____ 시 전까지 CHESTER PUBLIC UTILITY DISTRICT 사무소(251 CHESTER AIRPORT RD.)에 납부할 금액이 접수되지 않으면 수도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단수를 피하려면 이 계정의 모든 요금을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단수를 시행하는 지구 직원은 어떠한 납부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원이 단수를 위해 귀하의 부동산에 도착하면 \$35.00의 단수 수수료가 청구서에 추가됩니다.

서비스를 제때 복구하려면 정상 업무 시간(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4시 30분)에 납부하십시오. \$50.00의 재연결 요금이 계정 잔액에 부과되며, 계량기 재가동 시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 요금:

귀하의 계정에 \$5.00의 서신 수수료와 모든 연체 계정에 대한 10% 이자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연체란 청구일로부터 45일이 지나도 납부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이 단수 통지는 위 계정의 미납으로 인한 것입니다.

단수일 2일 전에 주거지에 경고 통지가 부착되는 경우 \$20.00의 게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통지가 부착된 날 정오 12시 전까지 CPUD 사무소(251 CHESTER AIRPORT RD.)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단수를 피하려면 즉시 이 문제를 처리하십시오.

날짜: _____

이 서신 사본과 함께 납부금을 다음으로 보내십시오: Allan Homme, CPUD 수석 감독관

위의 연체 요금을 전액 납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2 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청구서를 나누어 납부하는 납부 계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연장 요청은 이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3 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가 있는 의사 또는 외과의가 주거용 서비스 중단이 생명을 위협한다고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귀하가 정상 납부 기간 내에 서비스 요금을 납부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경우, 12 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미납 잔액의 분할 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5 일 연체된 미납 잔액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지구의 서비스 중단 정책 전문은 지구 사무소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기관에서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Plumas Crisis Intervention & Resource Center (530) 283-5515 - Quincy

www.PCIRC.Com

ABC Center (Chester, 화/수/목) (530) 259-4156 - Chester

서비스나 요금에 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조사를 요청하려면, 이의가 있는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요청 또는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납부 약정을 도와드릴 수 있는 지구 담당자 연락처: (530) 258-2171.

서비스 종료를 피하기 위해 납부하거나 납부 약정을 해야 하는 기한: _____
_____까지. 이제 계정 번호와 직불 카드 또는 신용 카드로 온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 www.paymentservicenetwork.com 또는 chesterpud.org. 사무소에서는 현금도 받습니다.

경고: 서비스가 중단되면 서비스를 복구하기 위해 위에 표시된 계정 잔액과 다음의 추가 요금 및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용 재설정 보증금(수도 서비스) \$40.00

신용 재설정 보증금(하수 서비스) \$40.00

단수 수수료 \$35.00

및 재연결 요금 \$50.00

CHESTER PUBLIC UTILITY DISTRICT

서명 _____

Allan Homme

우편 발송 및 게시 증명서

본인 Kelly Sanders 는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위증 시 처벌을 받을 것을 전제로, 본인이 Chester Public Utility District 의 서기이며 위의 서비스 종료 예정 통지서의 정확한 사본이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우편 요금을 전액 선납한 1 종 우편으로, 봉인된 봉투에 넣어 위에 표시된 고객 주소로 고객에게 발송되었습니다.

☐ _____에 위에 표시된 서비스 대상 부동산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되었습니다.

이 증명서는 _____에 캘리포니아주 Chester 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위에 언급된 절차는 단수 보호법(SB-998)의 요건을 준수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Chester PUD 사무소 (530) 258-2171 로 전화하십시오.